러시아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러시아 연방(Russian Federation)
2. 수도 : 모스크바(Moscow, 1,268만명)
3. 인구・면적 : 14,674만명(2020년), 17,098,246㎢
4. 공용어 : 러시아어
5. 1인당 GDP : 11,585달러(2019년)
6. 독립일 : 1991. 8. 24.(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양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❍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

2. 연혁

❍ 1990. 12. 15.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
❍ 1991. 7. 12. 헌법재판소법 제정(재판관 정원 15인)
❍ 1991. 10. 30. 제1기 헌법재판소 구성(재판관 13인 선출)
❍ 1993. 10. 7. 옐친 대통령 대통령령으로 헌법재판소 기능 정지
❍ 1993. 12. 12. 신헌법 제정
❍ 1994. 7. 21. 신헌법재판소법 제정
❍ 1995. 2. 9. 제2기 헌법재판소 구성(재판관 19인 선출)
❍ 2008. 12.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
❍ 2020. 7. 1. 헌법 개정
  – 개헌투표(all-Russian vote)로 개정 승인
  – 재판관 정원 11인으로 변경
❍ 2020. 11. 9. 제17차 헌법재판소법 개정

3. 구성(헌법 제125조, 헌법재판소법 제2장, 제3장)

- ❍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[1)]
- ❍ 재판관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회 상원(Federation Council, 연방평의회)에서 비밀투표로 선출(재적의원 과반수 찬성)
  - – 상원 및 하원(State Duma, 국가두마)의원, 연방대법원, 연방 구성주체의 입법기관, 연방법무부, 전(全)러시아의 법률단체 및 법률 연구, 교육기관이 연방대통령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
- ❍ 재판관의 임기는 없고, 정년은 70세
- ❍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, 대통령 제청에 의해 상원에서 임명하며, 연임 가능.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, 부소장의 정년은 76세
- ❍ 재판관 자격 :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하고 법조 실무경력 15년 이상이며, 법학 분야의 공인된 고등자격을 가진 40세 이상의 국민으로,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이 없는 자
- ❍ 재판관은 상원의원, 하원의원, 기타 입법기관 의원 및 기타 공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, 기업 활동 및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

4. 권한(헌법 제125조, 헌법재판소법 제3조)

- ❍ 추상적 규범통제

  대통령, 상원, 하원, 상원의원 1/5, 하원의원 1/5, 대법원,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입법 및 행정기관의 제청이 있을 때,
  - – 연방 헌법적 법률[2)], 연방 법률 및 연방대통령, 상원, 하원과 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
  - –소속공화국(Republic)의 헌법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헌장(Charter) 및 연방관할 업무와 연방과 구성주체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포

---

1) 헌법상 재판관의 수는 11명이지만, 2020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전에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은 1994년 헌법에 근거하여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재판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은 12명

2) 조직법과 유사하며, 비상사태, 헌법개정, 연방구성체 지위 변화, 정부, 국민투표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

된 연방구성주체들의 법률 및 기타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
- 연방 기구와 연방구성주체의 기구 간에 체결된 협약과 연방구성주체들 상호 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
- 발효되지 않은 국제조약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

○ 구체적 규범통제
- 소송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또는 당해사건 법원의 제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, 혹은 적용될 연방 법률과 연방대통령, 연방 상원, 연방 하원, 및 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규명령 등의 위헌여부심판
- 소송당사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 원칙이 적용됨

○ 대통령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 서명 전, 러시아 연방 헌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, 연방 헌법적 법률 및 연방법률 등의 합헌성 검토

○ 공포 전, 연방 구성체 법률의 합헌성 검토

○ 국민투표에 부의된 문제의 헌법 합치 여부

○ 러시아 연방에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, 국제법원 및 중재법원의 결정이 공공질서에 위반될 경우, 해당 결정의 이행 가능성 판단

○ 권한쟁의심판
- 연방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
- 연방기관과 연방구성주체의 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
- 연방구성주체들의 최고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

○ 연방헌법의 유권 해석

○ 상원 제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반역 및 중대 범죄 등에 관한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심판

○ 헌법재판소 관할사항에 관한 법률안 제출권

○ 기타 연방 헌법, 연방 헌법적 법률, 연방협약에서 부여한 권한 행사

5. 심리 및 결정

○ 최종 결정을 위한 평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짐(헌법재판소법 제70조)

○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 최종 결정은 참석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(헌법재판소법 제72조)

- 법규명령, 연방 기관간 협약, 발효되지 않은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 조약, 국민투표에 붙여진 사안, 연방에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·국제법원 및 중재법원의 결정, 대통령 소추 관련 절차, 대통령의 사임,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대통령직무수행불가 등으로 인한 대통령의 조기 퇴임과 관련한 결정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합헌으로 결정(헌법재판소법 제72조)
- 권한쟁의와 관련한 결정은 모두 과반수로 결정
- 연방헌법에 대한 해석은 재적 재판관 2/3 이상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(헌법재판소법 제72조)

○ 재판관들은 기권이 불가능하고(헌법재판소법 제72조), 반대의견이 있는 재판관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는 회의록에 첨부되나 외부에 공표되지 아니함(헌법재판소법 제76조)

○ 위헌으로 인정된 법령이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러시아연방 헌법에 상치되는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들은 발효되지 않음(헌법 제125조 제6항)

○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합헌이라고 판단된 법률이나 조항은 다른 해석 방식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됨(헌법 제126조 제6항)

○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(헌법재판소법 제79조)

○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러시아 연방 내에 위치한 행정, 입법, 사법기관, 지방정부, 기업, 단체, 공무원, 시민을 기속함(헌법재판소법 제6조)

6. 연락처

○ 주소 : 1, Pl. Senatskaya St. Petersburg, Russian Federation, 190000

○ 전화번호 : +7 (812) 404-33-11

○ 팩스번호 : +7 (812) 404-31-99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ksrf.ru/

※ 출처 : 러시아연방 헌법
헌법재판소법

(2021. 5. 작성)